

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

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,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. 6. 18. 부산해양경찰서장

□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

순번	항구명	소재지	고시구역 세계측지계 (WGS-84)
1	부 산	부산시	제1항로 부근 (부산항로)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° -04′ -50.8″ 동경 129° -04′ -46.4″ ② 북위 35° -05′ -06.4″ 동경 129° -05′ -20.0″ ③ 북위 35° -05′ -01.0″ 동경 129° -05′ -37.4″ ④ 북위 35° -04′ -00.5″ 동경 129° -06′ -45.5″ ⑤ 북위 35° -05′ -15.0″ 동경 129° -07′ -30.3″ ⑥ 북위 35° -05′ -57.0″ 동경 129° -07′ -08.5″
			제2항로 부근 (남항항로 및 남항)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° -04′ -52.2″ 동경 129° -02′ -28.0″ ② 북위 35° -02′ -00.0″ 동경 129° -04′ -36.0″ ③ 북위 35° -01′ -24.0″ 동경 129° -01′ -36.0″ ④ 북위 35° -03′ -11.0″ 동경 129° -00′ -56.0″ ⑤ 북위 35° -03′ -42.0″ 동경 129° -01′ -21.0″ ⑥ 북위 35° -04′ -34.0″ 동경 129° -01′ -26.0″
			제3항로 부근 (감천항로 및 다대포항)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

			① 북위 35° -03′ -11.0″ 동경 129° -00′ -56.0″ ② 북위 35° -01′ -24.0″ 동경 129° -01′ -36.0″ ③ 북위 35° -00′ -55.0″ 동경 128° -59′ -08.0″ ④ 북위 35° -03′ -00.0″ 동경 128° -58′ -54.0″
2	송정항	부산 해운대구	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° -10′ -43.0″ 동경 129° -12′ -24.0″ ② 북위 35° -10′ -34.0″ 동경 129° -12′ -24.0″ ③ 북위 35° -10′ -34.0″ 동경 129° -12′ -54.0″ ④ 북위 35° -10′ -56.0″ 동경 129° -12′ -48.0″
3	청사포항	부산 해운대구	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° -09′ -18.0″ 동경 129° -11′ -00.0″ ② 북위 35° -09′ -12.0″ 동경 129° -11′ -00.0″ ③ 북위 35° -09′ -12.0″ 동경 129° -12′ -24.0″ ④ 북위 35° -09′ -54.0″ 동경 129° -12′ -24.0″ ⑤ 북위 35° -09′ -54.0″ 동경 129° -11′ -50.0″
4	우동항	부산 수영구	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° -09′ -41.5″ 동경 129° -08′ -06.0″ ② 북위 35° -09′ -43.8″ 동경 129° -08′ -04.5″
5	민락항	부산 수영구	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° -09′ -10.5″ 동경 129° -07′ -28.0″ ② 북위 35° -09′ -06.0″ 동경 129° -07′ -28.0″ ③ 북위 35° -09′ -06.0″ 동경 129° -08′ -04.0″ ④ 북위 35° -09′ -16.0″ 동경 129° -08′ -04.0″

○ 재검토 기한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 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18 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『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지정』 고시(부산해양경비 안전서 제2015-07호)는 폐지한다.



부 산 항



송 정 항



청 사 포 항



우 동 항



민락항